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995. 12. 7.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1995년 11월 10일

3. 제 안 이 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의 응시수수료 20,000으로는 동 시험경비를 확보할 수 없어 교육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 및 해당경비 확보 측면에서 동 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4. 주 요 골 자

1인당 시험 응시수수료를 20,000원에서 25,000으로하되, 실기과목 응시자는 35,000원으로 변경

5. 검토 보고

(전문위원 김 영 만)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현행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의 응시수수료로는 동 시험경비를 충당할수 없어 교육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 규정을 근거로 수익자부담원칙 및 해당경비 확보 측면에서 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타시도와의 형평성 비교와 수험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6. 개정 조례안 : 별 첨